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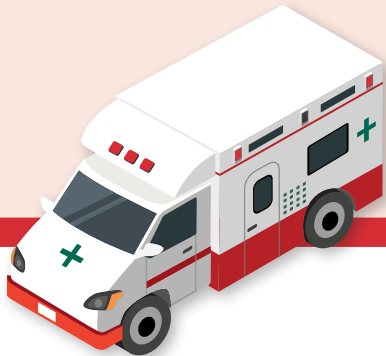


check!

구급차 요금미터장치 검정 실시

“구급차 이송요금 청구 및 결제 투명화”

2019년 9월 1일 이후 운용하시는
구급차 정기검사나 임시검사를 받으실 때
‘요금미터장치의 사용검정’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6의2, 「자동차관리법」 제4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4조 및 제95조에 의하여 구급차 운용자는 구급차 요금미터장치의 검정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구급차 요금미터장치 검정을 위한 준비기간을 거쳐 2019년 9월 부터 요금미터장치 검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구급차 요금미터장치 검정 실시



I. 구급차 요금미터장치 검정 관련 기본사항

Q1. 구급차 요금미터장치 검정이 무엇인가요?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5조에 따라 구급차 요금미터장치 검정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시행 시기	검정기관
제작검정	요금미터장치를 제작 또는 수입 때에 실시하는 검정	한국교통안전공단
수리검정	택시미터를 자동차에 부착, 요금장치 개조 및 수리할 때 실시하는 검정	시·도지정 택시미터 수리업자
사용검정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및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 시 실시하는 검정	한국교통안전공단 민간지정정비사업자

Q2. 모든 구급차가 요금미터장치를 장착해야 하나요?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의 구급차 운전자 중 다음의 대상이 운용하는 구급차에는 반드시 요금미터장치를 장착하여야 합니다.

- 의료기관(제2호)
 -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를 받은 자(제4호)
 - 응급환자 이송업을 목적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제5호)
- ※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개설된 부속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미 장착 가능

요금미터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법적 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제2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및 별표 16의2

Q3. 모든 구급차가 요금미터장치 검정을 받아야 하나요?

- 요금미터장치 장착대상 구급차에 요금미터장치를 신규 부착 시에는 ‘수리검정’을 받아야 하며,
이미 부착된 요금미터장치는 구급차 정기검사나 임시검사 시에 ‘사용검정’을 받아야 합니다.

※ 제작검정은 요금미터장치 제작·수입자에 대한 의무로 구급차 운운자는 해당 사항 없음

요금미터장치 검정을 받아야 하는 법적 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6의2
1. 구급차 기본 장착 장비 기준
다. 구급차 요금미터장치는 제11조에 따른 이송처치료를 금액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구급차 요금미터장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는 「자동차관리법」 제4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 및 제95조의 택시요금미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택시요금미터’는 “구급차 요금미터장치”로, “택시요금체계”는 “제11조에 따른 이송처치료 요금체계”로 보되, 검정에 관한 사항은 택시요금미터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자동차관리법」 제47조(택시미터의 검정 등) ① 택시요금미터(이하 “택시미터”라 한다)를 제작·수입 또는 사용하는 자는 그 택시미터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Q4. 구급차 요금미터장치 검정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률 제55조에 따라 의료기관 등의 개설 또는 영업에 관한 허가 취소 및 업무정지 대상이 됩니다.
- 2019년 9월 1일 이후 매년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구급차 정기검점 시 요금미터장치 검정대상 차량의 ‘사용검정’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0조(지도·감독)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운용되는 구급차등에 대하여 매년 한 번 이상 구급차등의 운용상황과 실태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정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II. 구급차 요금미터장치 사용검정 관련 상세사항

Q1. 구급차 요금미터장치 사용검정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자동차 정기검사 및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를 받을 때 구급차의 요금미터장치 사용검정을 함께 받게 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나 임시검사 일정은 차량에 따라 상이하므로, 기간이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정기검사 주기) 구급차는 대부분 비상업용 중형 승합자동차에 해당이 되어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분		검사유효기간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차령 8년 이하	1년
	차령 8년 초과	6개월

·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 주기) 구급차의 기본 차령은 9년이며, 차령이 만료되기 전 2개월 내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차령연장신청 절차를 거쳐 6개월씩 최대 2년까지 연장하여, 총 11년 운행 가능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 및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2)

Q2. 구급차 요금미터장치 사용검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운용하시는 구급차가 자동차검사기관(교통안전공단 또는 민간지정 정비사업자)에서 정기검사나 임시검사를 받을 때 자동차등록증을 자동차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자동차검사기관에서는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VIMS)을 통하여 검사 받는 구급차가 요금미터장치 사용검정 대상인지를 식별한 후 자동으로 접수를 시행하므로, 구급차 운용자가 별도로 검정 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 검사종료 후 자동차검사기관에서는 사용검정에 합격한 요금미터장치에 ‘검정합격필증’을 부착하고, 소유자의 검정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택시미터검정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구급차 요금미터장치 검정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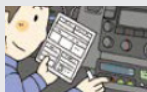
Q3. 구급차 요금미터장치 사용검정에서는 무엇을 검정하나요?

- 요금미터장치의 봉인 탈락 여부 등 구급차 요금미터장치의 외형에 대해 확인하고, 요금을 산정하는 기본거리와 이후거리의 허용차를 주행검사를 통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정종류	검정항목		검정방법
	구분	적용항목	
요금미터장치 사용검정	구조	겉모양 표기 및 표시	· 봉인이 탈락되지 아니하고 겉모양이 파손되지 않을 것 · 표기 및 표시가 확실하게 부착되어 있을 것 · 구조검정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 주행검사 시행
	기차	거리의 허용차	

Q4. 구급차 요금미터장치 사용검정 순서 및 소요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구급차 요금미터 사용검정 순서



육안검사

구급차미터 표기 및 표시상태(모델명, 기물번호 등)와 봉인의 탈락 및 파손 등 육안 확인



봉인 설치 기준

펄스 조정부와 미터기 외함을 봉인선으로 연결하여 1차 봉인 한 후 그 봉인선을 이용하여 차체와 연결하여 2차 봉인을 실시하고, 구급차미터의 좌·우 2개소에 구급차 미터와 차체를 봉인선으로 연결하여 봉인



기기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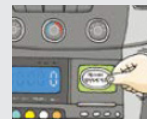
구급차미터 주행거리 허용오차에 대한 검사

기본거리 10,000m 이후거리 1,000m



주행거리 허용오차

+5.0% ~ -1.0%
(예. 기본거리 10,000m, 허용오차 : 10,500m ~ 9,900m)



결과처리

구급차 요금미터 사용검정 합격필증 부착
구급차 요금미터 사용검정 확인서 발급
구급차 요금미터 사용검정 부적합 된 경우에는 즉시 수리검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수리검정을 받는 경우 별도의 재검사는 불필요

- 구급차 요금미터장치 사용검정 시 기본거리(10,000m), 이후거리(1,000m) 확인 등으로 약 1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Q5. 구급차 요금미터장치 사용검정 비용은 얼마인가요?

-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검사소에서 구급차 요금미터장치 사용검정을 받으시면 19,800원입니다.

검정기관	검정 비용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19,800원
민간지정 정비사업자	* 공단의 사용검정 수수료를 준용할 예정이이나, 비용은 사업장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개별 문의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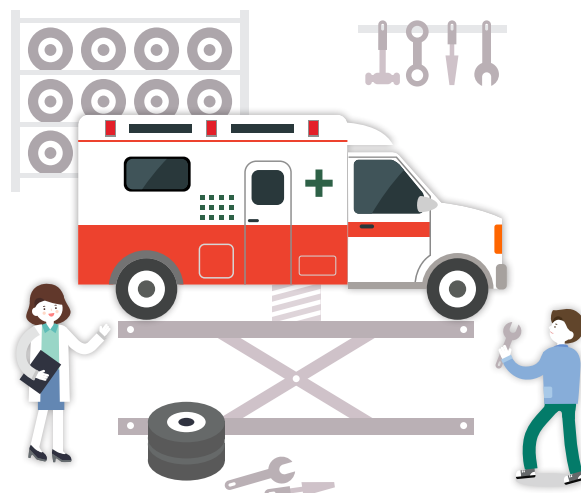
Q6. 사용검정 결과가 부적합으로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용검정에 부적합된 구급차는 즉시(당일) 해당 시도에서 지정한 수리검정 업체에 방문하여 수리검정을 받아야 합니다.(수리검정 시, 사용검정 재검을 위한 검사소 재방문은 불필요)

국토교통부 고시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4항

Q7. 검사기관 목록 및 관련 정보

- 전국 101개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출장검사소 포함), 1,836개 민간지정정비사업자, 총 1,937개 검사소가 있으며, 가까운 검사소에서 구급차 요금미터장치 사용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현황〉

시도	검사소명	전화번호	주 소
서울	강남자동차검사소	02-459-2844	서울특별시 강남구 현로길 13(윤현동)
	성산자동차검사소	02-306-5986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20(성산동)
	노원자동차검사소	02-972-4121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62길 41(하계동)
	구로자동차검사소	02-2037-6000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113(오류동)
	성동자동차검사소	02-2244-2556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람길 117(송정동)
부산	상암자동차검사소	02-309-7033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릉길 15(상암동)
	사하자동차검사소	051-204-9536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대로 631(신명동)
	주례자동차검사소	051-324-1431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전로 256(주례동)
	해운대자동차검사소	051-783-250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201(세송동)
대구	이현자동차검사소	053-565-5000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로 272(이현동)
	수성자동차검사소	053-791-6040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변로 33(노변동)
인천	달서자동차검사소	053-587-8181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5길 10(유천동)
	인천자동차검사소	032-831-0196	인천광역시 남구 아람대로 253번길 81(학익동)
광주	서인천자동차검사소	032-579-7811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 218(가좌동)
	광주자동차검사소	062-606-7650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로 96(송하동)
대전	북광주자동차검사소	062-962-09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877(도천동)
	대전자동차검사소	042-523-5095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로 44(변동)
울산	신탄자동차검사소	042-931-8106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1417번길 31(문평동)
	유성자동차검사소	042-535-7147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232번길 123(월평동)
세종	울산자동차검사소	052-269-8598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로 8(여천동)
	세종자동차검사소	044-868-0515	세종특별자치시 종충운동길로 11-5(대평동)
경기	수원자동차검사소	031-211-241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 240(매탄동)
	의정부자동차검사소	031-871-5000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287(호원동)
강원	성남자동차검사소	031-747-9467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길로 148번길 8(상대원동)
	부천자동차검사소	032-674-5000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로 42(삼정동)
충청	안양자동차검사소	031-422-450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92(관양동)
	고양자동차검사소	031-977-3939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로 141(성석동)
충남	남양주자동차검사소	031-575-1472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동정로 273번길 31-19
	서수원자동차검사소	031-293-9339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24(서둔동)
충북	용인자동차검사소	031-281-3709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853(상하동)
	안산자동차검사소	031-475-527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천서로 6길 16(월피동)
충남	춘천자동차검사소	033-262-2255	강원도 춘천시 동내로 10(석사동)
	원주자동차검사소	033-747-1110	강원도 원주시 행구로 255(행구동)
충북	강릉자동차검사소	033-646-5000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1952-10(홍제동)
	태백자동차검사소	033-553-8191	강원도 태백시 태백로 576(화전동)
충남	동해자동차검사소	033-521-6303	강원도 동해시 강원남부로 4772(단봉동)
	청주자동차검사소	043-272-188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86번길 21(신봉동)
충남	충주자동차검사소	043-853-5050	충청북도 충주시 목행산단 6로 27(금릉동)
	천안자동차검사소	041-552-6905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음봉로 909-15(백석동)
전북	홍성자동차검사소	041-632-5837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1207
	전주자동차검사소	063-211-993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3가 신행로 44(팔복동3가)
전남	군산자동차검사소	063-467-3508	전라북도 군산시 외항로 292(소룡동)
	남원자동차검사소	063-625-2803	전라북도 남원시 충정로 265-15(월락동)
전북	정읍자동차검사소	063-535-6009	전라북도 정읍시 해평북로길 11(공평동)
	익산자동차검사소	063-832-0404	전라북도 익산시 석암로 13길 101-7(팔봉동)
전남	목포자동차검사소	061-283-5004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로 153(상동)
	순천자동차검사소	061-741-5532	전라남도 순천시 해촌길 10(조례동)
전남	여수자동차검사소	061-653-9893	전라남도 여수시 만성로 184-11(민흥동)
	포항자동차검사소	054-285-213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성안로 45번길 34(괴동동)
경북	구미자동차검사소	054-456-7514	경상북도 구미시 아문로 722(원평동)
	안동자동차검사소	054-858-8447	경상북도 안동시 경북대로 166-13(수성동)
경북	영주자동차검사소	054-636-0279	경상북도 영주시 구성로 88번길 52(휴천동)
	문경자동차검사소	054-552-2820	경상북도 문경시 영신로 81(점촌동)
경남	경주자동차검사소	054-773-0448	경상북도 경주시 산업로 4391(용강동)
	창원자동차검사소	055-273-500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494(대원동)
경남	진주자동차검사소	055-752-0814	경상남도 진주시 술밭로 43번길 15(성평동)
	거창자동차검사소	055-945-144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법티재로 1301(거창읍)
제주	김해자동차검사소	055-333-5205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65-6
	제주자동차검사소	064-723-311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봉로 79(도련이동)